

제 664 호
1978. 6. 13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구 자 순
전 기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
전 화 75-7834
인 력 :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
전 화 75-6000

시 보

차 례

- 조 례
 - 제 1270 호 : 서울특별시 지하철전시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
중 개정조례..... 3
- 규 칙
 - 제 1759 호 :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..... 3
- 고 시
 - 제 276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..... 5
 - 제 277 호 :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..... 5
 - 제 278 호 : 도시계획시설 (고가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..... 6
 - 제 279 호 :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결정..... 6
 - 제 282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폐지 및 변경신설결정..... 7
 - 제 283 호 :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..... 9
 - 제 284 호 :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..... 9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285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, 통신시설) 폐지 및 지적승인...	10
제 286 호 :	도시계획사업 (쓰레기 및 오물처리장) 실시 계획 인가.....	11

◎ 공 고

제 240 호 :	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공사완료.....	11
제 241 호 :	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.....	13
제 242 호 :	KS 표시정지처분.....	14
제 243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계획 공람공고.....	15
제 246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) 실시계획 공람공고.....	25

◎ 사 령

조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지하철전시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
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1978년 6월 14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270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전시장시설
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지하철전시장 시설사용료
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5 조 (사용료) 전시장의 1일 사용
료는 사용면적 1평당 500원으로
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
행한다.

규 **칙**

서울특별시 재무회계중 개정 규칙을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1978년 6월 13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759 호

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
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6 호중 "시민회관"을 "세
종문화회관"으로 한다.

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중

징 수 관: "재무국장"을 "재무국
장"으로

일반회계분임징수관: "세정과장"을
"세무 1과장"

분임경리관: "회계과장"을 "회계 1
과장"

물품관리관: "회계과장"을 "회계 1
과장"

지 출 원: "회계과지출계장"을
"회계 2과 지출 1계장"

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: "세정과 과장
1계장"을 "세무 1과 세
입총괄계장. 다만, 재산수입
은 관제과 재산처분계장"

세입세출외원금출납원: "회계과지출계
장"을 "회계 2과지출 2계
장"

물품출납원: "회계과사무계장"을
"회계 1과계약 2계장"

임시전도자금출납원: "시장이 필요에
따라 지정"을 "각과주무

<p>계장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별도로 정"으로 한다.</p> <p>제 5 조 제 1 호 중 "예정금액 200 만원"을 "예정금액 1,000 만원"으로, "예정가격 100 만원"을 "예정가격 500 만원"으로 하고 동조 제 2 호 중 "50 만원"을 "300 만원"으로 한다.</p> <p>제 6 조 중 "회계과장"을 "소관과장"으로 한다.</p> <p>제 21 조 제 1 항, 제 22 조 중 "회계과장"을 "회계 1 과장과 회계 2 과장"으로 제 23 조 중 "회계과장"을 "회계 1 과장"으로 한다.</p> <p>제 27 조 제 1 항 중 "(예산과장)"을 "(예산담당관)"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제 3 항 중 "회계과장"을 "회계 2 과장"으로 한다.</p> <p>제 31 조, 제 32 조 및 제 114 조 제 2 항 중 "세정과장"을 "세무 1 과장"으로, "회계과장"을 "회계 2 과장"으로 한다.</p> <p>제 42 조 중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③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공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.</p> <p>제 50 조 제 2 항 중 "회계과장"을 "차상급자"로 하고</p> <p>제 61 조 제 1 항 중 "3 만원미만"을 "5 만원이하"로 한다.</p>	<p>제 71 조 및 제 83 조, 제 114 조 제 1 항 중 "회계과장"을 "회계 2 과장"으로 하고</p> <p>제 87 조 중 "세무과장"을 "세무 1 과장"으로 "회계과장"을 "회계 2 과장"으로 한다.</p> <p>제 11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중 "회계과"를 "회계 1 과"로 하고 동조 제 4 항 중 "회계과장"을 "회계 1 과장"으로 한다.</p> <p>제 179 조 제 2 항 중 "익월 5 일까지"를 "익월 10 까지"로 한다.</p> <p>제 181 조 본문을 제 1 항으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② 각청, 소외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회계년도 경과후 15 일 이내에 회계 2 과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8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본장에서 규정 한 것 외에는 계산장영규칙 중 제 10 조 내지 제 12 조, 제 14 조, 제 18 조, 제 19 조, 제 27 조, 제 29 조, 제 32 조, 제 33 조, 제 50 조, 제 68 조, 제 7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전 중건의 규정에 의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개정(대통령령 제 9034 호 78.5.30)에 따라 신설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한 관직 지정으로 본다.</p>
--	--
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고 시 </div>		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										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6 호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0 도로결정 조서		1978.6.12		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	점	종	결	비	고	
신설	소로	3		6m	306m	하월곡동 80-	72	하월곡동 81-	92			
"	"	"		"	254	"	82-230	"	77-239			
"	"	"		"	276	"	82-176	"	70-20			
"	"	"		"	205	"	82-9	"	76-3			
*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							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7 호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'77.		3.16)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										
0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		1978.5.29 서울특별시장										
구분	시설명	위				치		면	적	비		고
신설	주차장	전농동 620-41, 42, 47 일대						2,200㎡		도로는 지하에 한함		
		전농동 620-69						590㎡				
*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						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8 호

도시계획시설 (고가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고가도로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 ('77. 3.16)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6.12

서울특별시 장

○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 모	비 고
신설	고가도로	성북구 동선동 2가 356-363 (성심학원내 육교)	B = 3.2 m L = 14 m	

*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9 호

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 ('77.3.16)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6.12

서울특별시 장

○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 모 (m)	비 고
신설	하수도	미아동 74-312	B = 7.75 L = 1,000	
"	"	미아동 653-118 ~ 655-1	B = 1.56 L = 1.165	
"	"	번 동 446-8 ~ 433	B = 7.9-9.6 L = 850	

*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82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폐지 및 변경신설결정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폐지 및 변경신설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('77.3.16) 권 0 로 신 조 서

한 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정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6.12

서울특별시장

구분	등급	류번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고
신설	소로	3		6	620	상도동 248-20	상도동 279-53	
"	"	"		"	30	" 264-58	" 279-336	
"	"	"		"	400	사당동 188-24	사당동 190-6	
"	"	2		8	600	신림동 246-46	신림동 251-256	
폐지	"	3		6	60	" 산 73-3	" 73-3	
"	"	"		6	110	" 246-46	" 251-256	
기정	"	"		"	90	동작동 57-25	동작동 58-28	
변경	"	"		"	85	"	"	위치변경
폐지	중로	1	188	20	300	성내동 340-17	성내동 310-1	
기정	소로	1		10	300	" 338-14	" 309	
변경	중로	1	194	20	300	" (광로 22)	성내동(중 1-187)	
기정	소로	2		8	240	역삼동 58-8	역삼동 78-5	
"	"	1		10	420	" 78-5	" 102-2	
변경	중로	3	107	12	640	" (대 1-22)	" 102-2	확장 일부 조정
기정	소로	3		6	280	" 746-1	" 134-2	
"	"	1		10	360	" 134-2	광로 19호(역삼14-1)	
변경	중로	3	108	12	640	대 로 1-22	광로 19호(")	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족원	연장	기 점	중 점	비 고
신설	중로	3	109	12	120	대 2-30 (역삼67-7)	역삼동 65-1	
기정	소로	2		8	130	역삼동 109-4	광로 19호	
변경	중로	3	110	12	120	"	"	
기정	소로	2		8	230	역삼동 102-27	역삼동 88-1	
"	"	1		10	150	역삼동 88-1	대 2-30	
변경	중로	3		12	380	대 2-30	역삼동 102-27	
기정	소로	3		6	300	대 2-30	역삼동 130	
변경	중로	3	1	8	300	대 2-30 (산 16)	역삼동 130	
신설	소로	2	2	8	150	역삼동 65-16	" 65-25	
"	"	"	3	8	360	대 2-30	" 134-3	
기정	"	3		6	150	대로 1-22	" 752-1	
변경	"	"	4	6	290	"	" 84-8	
신설	"	2	6	8	100	대 2-30	" 95-29	
"	"	"	7	8	140	역삼동산 13	" 107-6	
"	"	"	8	8	150	" 107-15	대 2-30 (역삼 107-7)	
"	"	"	9	8	100	" 92	역삼동 93-8	
"	"	"	10	8	100	" 92-6	" 102-28	
"	"	"	11	8	250	" 164	" 138-9	
기정	"	3		6	220	" 138-9	" 산 1-3	
변경	"	2	12	8	520	"	" 116	
신설	"	3	13	6	90	" 62-6	" 63-1	

*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83 호

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 호('78. 1.13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바 있는 영서변전소-덕부송전선 350 호 및 363 호간 송전선 건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('77.3.16) 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설비) 시행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(군)청 시민부사실 및 도시정비과(건설과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6.13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지 : 경기도시흥군서면, 소래면지역 및 영등포구 일부지역 (별첨조서 참조)
- 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설비)
영서변전소-덕부송전선 350 호 및 363 호간 송전선 건설
- 3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93 한국전력 서울전력관리본부장 김차경
- 4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일 : 1978

나. 준공예정일 : 1978

5. 사업시행규모 : 송전철탑 23기 (총연장 6,295km)

6. 위치도면 및 계획평면도 : 별첨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양세 : 별첨

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 별락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84 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및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('77. 3.18)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6.14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					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			면적	비 고		
신설	주차장	강남구 성내동 60-3				562㎡	육외주차장		
*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									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5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(도로, 통신시설) 배치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 통신시설)을 다음과 같이 배치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</p>					<p>제 41 호('77.3.16)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78.6.14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			
○ 도로 배치조서	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	중 점	
배치	소로	2	1	8m	400m	대치동 45		대치동 18-12	
"	"	"	2	8	300	" 45		" 18-12	
"	"	"	3	8	180	" 30-2		개포동 1-1	
"	"	"	4	8	190	" 31-2		" 2-2	
"	"	"	5	8	160	" 45		" 4-1	
○ 지적승인 조서					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			면적	비 고		
신설	통신시설	강남구 대치동 45일대				70.595㎡			
*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					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86 호

도시계획사업 (쓰레기및오물
처리장) 실시계획인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 호로 지적
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쓰레기
및 오물처리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
법 제 25 조와 동제 26 조 및 건설부고
시 제 41 호 ('77.3.16) 규정에
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실시 계획인
가하였기 이를 고시함.
- 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
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
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
음함.
- 3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청소과에 비
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
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6.14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의 위치 : 상계동, 월계동
중랑천변일대 (별첨 도면표시, 생
략)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
사업 (쓰레기 및 오물처리장)
- 3. 사업의 규모 :

면적약 100.000평
매립함 약 1,153,000톤
(256,000대)

- 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도봉구
청장)
- 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
78.1 - 80.12
- 6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
한 관계인 주소, 성명 생략
- 7. 토지조서 : 생략

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40 호

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
시행허가공사판로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1 호 ('77.
6.1) 로 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
관악구 사당동 산 44-6 호의 4 필지
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
공사가 완료되었거 도시계획법 제 57
조 2, 동법 시행령 제 7 조 2 및 건
설부 고시 제 41 호 ('77.3.16) 의

1.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.

2. 본 공사완료에 관한 관계도가. 노 선 조 서

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구분	등급	유별	목원	연 장	기 결	종 결
신설	소로	3	6 m	185 m	사당동 산 45-11 호	사당동 산 44-6 호
"	"	3	6	235	" 산 44- 6 호	"
"	"	3	6	194	"	"
"	"	3	6	101	"	"
"	"	3	6	19	"	"
"	"	3	6	43	"	"

나. 공 원 조 서

구분	분 류	공 원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아동공원	사당아동공원	사당동 산 44-6 호	761 ㎡	
"	"	사당계 1 공원	"	205 "	

다. 공용의 청사조서

구분	분 류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공용의 청사	동청사	사당동 산 44-6 호	543 ㎡	

*별첨 추당성과도 참조

1978.6.12

서울특별시장

<p>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산 44-6 호의 4 필지</p> <p>2. 사업의 종류 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</p> <p>3. 사업시행면적 : 20,962 평방미터</p> <p>4. 사업 시행자 :</p> <p>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331-26 호 정 우 식</p> <p>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141-11 박 창 호</p> <p>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성동 43-25 윤 유 택</p> <p>서울특별시 관악구 본 동 9번지 이 창 주</p> <p>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</p> <p>가. 착수 - 1977.6.27</p> <p>나. 준공 - 1978.5.29</p>	<p>규칙 운영요강 제 27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(한국공업규격) 표시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.</p>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241 호</p> <p>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</p> <p>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</p>	<p>1978. 6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허가번호: 1005 호</p> <p>2. 허가일자: 74.12.6</p> <p>3. 제조업체명 : 한우전기공업사 (변성진 보양전기공업사)</p> <p>4. 소재지 : 강남구 거여동 178-18</p> <p>5. 품 명 : 형광램프용 안정기</p> <p>6. 규격 및 규격번호 : 100 V 20 W (KSC 8102)</p> <p>7. 처분사유 : KS 기준 미달</p> <p>8. 해제사유 : 재시험결과 KS 기준에 합격</p> <p>9. 해제일자 : 78.6.12</p>

◎서울특별시 공고 제 242 호

K S 표시정지처분

공업 표준화법 제 21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 27 조 및 동 제 29 조 규정에 위거 다음과 같이

K S (한국공업규격) 표시 정지처분하
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
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78.6.13

서울특별시

허가번호	787	1609	788
허가일자	78.3.20 (갱신)	과 동	73.3.15
제조업체명	(주) 부산파이프	"	과 동
대표자	이 창 우	"	"
소재지	서울영등포구개봉동 180-15	"	"
규격번호	KSD 3507	KSD 3537	KSO 8401
품명	배관용 탄소강관	수도용 아연도강관	전선관
규격	20 A (후, 맥)	20 A (맥)	φ19 (박강) φ22 (후강)
처분기간	처분일로 부터 1개월후 당시 해제조치가 있을때 까지	과 동	과 동
처분사유	K.S 규격 미달	"	"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243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
실시계획공람공고

나. 공고기간: 78.6.-78.6.
1978.6.
서울특별시
공람개요

1. 건설부 고시 제 169 호(76.10.28)로 고시된 성산대로(종로구 내자동~양명동로타리)공사 구간내에 저하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.

2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, 서대문구청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가. 공고장소: 종로구청, 서대문구청

1. 사업장위치: 성산대로공사(종로구 내자동~양명동로타리)
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: 성산대로공사

3. 사업의 규모: 가. 폭=35m
나. 연장=3,105m

4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

5.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인기일~79.8.30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: 변형 토지조서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: 다음

건 물 조 서

순번	소재지		구조	면적		소유자	
	동	지번		공부	사정	주소	성명
1	사직	294-2	목조외집	11.27		충정로 4가 125-1	권오창
2	"	304-19	목조외집	15.0		사직동 304-16	변영운
3	"	304-18	연와조	16.0		내수동 24	유세용
4	"	304-13	목조외집	13.0			신영숙
5	"	304-21	"	15.0		성동구 승파동 70	동양정
6	"	304-20	"	16.0		내수동 164	조계대
7	"	304-43	철근콘크리트 평무	145.1	①층	세종로 89	국채신
				102.36	②층	"	노동조
				345.64	③층이상	"	"

순번	소재지		구조	면적		소유자	
	동	지번		공부	사경	주소	성명
8	사직	304-2	무조와급	20.00		중구 소공동 62-5	한국상은
9	행촌	1-106	브릭조명옥	28.33	① 층		장석완
				21.92	③ 층		"
10	"	1-79	세멘트블록 벽돌옥	30.33	①		홍우석
				35.05	②		"
				10.36	옥탑		"
				6.01	지하		"
11	"	1-44	"	37.29	①		심재복
				24.74	②		"
12	"	1-34	연와조	20.5	①		박정수
				15.83	②		"
				4.28	지하		"
13	"	53 1-65 -72	연와조	54.26	①	행촌동 53	이장표
				47.34	②		"
				26.02	지하		"
14	"	1-38	연와와급	25.33	① 층		유지수
				19.5	② "		"
15	"	1-50	철근콘크리트 블록옥	22.8	① "		강용성
				35.0	② "		"
				30.16	③ "		"
16	"	16-3	세멘트블록 세와급	6.94		영등포구 화곡동 143	김영상
17	"	25-2	"	12.0		송월동 101-1	김진달
18	"	25-1	"	20.5		행촌동 25-1	한기춘
19	"	25-8	"	21.25			장영기
20	"	-3 37-4 -6	연와와급	24.0	① 층	행촌동 37-6	황영하

순번	소재지		구 조	면적		소 용 자	
	동	지 번		공 부	사 정	주 소	성 명
21	행촌	37-16 37-17	연와조 단층	8.0	② 총	37-2	황 명 하 문 수 용
				14.0	① "		
				5.0	② "		
22	"	40-15	목조와급	14.0			이 완 선
23	"	45-13	연와평옥	22.63	①		"
				21.04	②		
				4.88	지 하		
24	"	144-1	철근콘크리 트 스라브	29.27	①	행촌동 144	경 경 태
				29.27	②		
				29.27	③		
				17.06	④		
				26.80	지 하		
25	"	144-2	목조와급	13.0			김 시 진
26	"	144-10	"	16.0			김 박 석
27	"	158-4	"	13.0			김 오 순
28	"	144-11	철근콘크리 트 스라브	20.0	① 총	교북동 144-11	정 경 태
				20.0	② "		
				20.0	③ "		
				20.0	④ "		
				16.23	지 하		
29	"	158-5	목조와급	13.0			정 태 신
30	"	158-6	"	13.0			최 하 정
31	"	158-1	철근콘크리 트 평옥	12.32	①	평태 신데리 3	최 한 귀
				12.63	②		
				7.22	③		

순번	소재지		구 조	면 적		소 유 자		
	동	지 번		공 부	사 정	주 소	성 명	
32	행촌	158-2	세멘트벽돌 연습	15.64	①	행촌동 158-2	백대신	
				15.14	②		"	"
				2.17	지 하		"	"
33	"	158-10	목조와집	14.18		행촌동 202	심명택	
34	"	158-9	"	8.0			김학하	
35	"	180-2	연와평우	12.27	① 총		김진하	
				12.27	② "		"	
				12.27	③ "		"	
36	"	180-3	세멘트벽돌 연습	22.94	① "		김희순	
				22.94	② "		"	
				19.64	③ "		"	
				4.48	④ "		"	
37	"	180-6	세브린 주택	6.93	① "		용병선	
				6.93	② "		"	
38	"	180-7	세브린 주택	6.91	①	행촌동 187	장정욱	
				6.91	② 총	"	"	
39	"	180-1	목조와집	24.0	① "	행촌동 209	장안전	
				10.0	② "		"	
40	"	208-5	"	18.0			이진만의 9인	
41	"	208-3	최근연와 평우	10.08	① "	현저동 46-15	임규재	
				12.25	② "	"	"	
				14.92	③ "	"	"	
42	"	290-85	연와조경우	75.11	① "	행촌동 209	장관	
				78.77	② "	"	"	
				117.01	③ 총이상	"	"	

순번	소재지		구 조	면 적		주 소	성 명
	동	지 번		공 부	사 경		
43	교부	209-11 128	무조와습	42.66		마포구 실수동 377	송 한 창
			연와옥온근	2.0			"
			연와도단습	18.0	①		"
				18.0	②		"
44	"	10-2	무조와습	12.0		교부동 10-2	김 윤 식
45	"	10-19	세민보외조	9.86		교부동 10-19	고 대 성
46	"	10-18	세민보외조	25.27	①		
			유	1.11	부 수		
47	"	10-16 17	철근콘크리트	58.88	① 총	교부동 10-11	한 격 부
			유	58.88	② "		"
				58.88	③ "		"
				58.88	④ "		"
				58.88	⑤ "		"
				21.97	무 상		"
48	"	10-14	철근콘크리트	58.88	지 하		
			유	19.77	① 총		
49	"	10-13		38.15	② 총 이상	마포구 도화동 2-70	이 벽 동
				30.29	①		"
50	"	10-12		32.22	②	교부 10-12	허 경 호
				32.22	③		"
				32.22	④		"
				32.22	④		"
				3.92	유 탐		"
			27.57	지 하	"	"	
			34.19	① 총	"	"	
			36.30	② "	"	"	

순번	소재지		구조	면적		소유자	
	동	지번		공부	사정	주소	성명
51	교부	1-50 52	세민연의점	36.30	③층	"	"
				36.09	④ "		
				30.0	① "		
				24.95	② "		
52	행촌	1-12 1-17 45	철근콘크리트 벽돌 우	1.75		교부 1-12	최병태
				56.31	①층		
				101.5	② "		
				97.77	③ "		
				67.53	④ "		
				67.53	⑤ "		
				31.86	옥탑		
				15.33	지하		
53	"	37-1 5	연와명옥	28.5	①층	"	"
				23.5	② "		
				4.4	지하		
				43.31	①층		
54	교부	5-1 2	철근콘크리트 벽돌 우	43.31	①층	교부 5-2	한도근
				43.31	② "		
				43.31	③ "		
				43.31	④ "		
				7.8	옥탑		
				43.31	지하		
55	"	1-46	무조와급	19.5			대명
56	"	10-3	"	17.5			고대성
57	"	10-1	"	13.0			민우주

토 지 조 서														
종 로 구					197									
토지소재		이 동 전			이 동 후			이 동 일		소 용 자				
구	동	지 번	지 목	면 적	등 급	지 번	지 목	면 적	등 급	년 월 일 및 사유	주 소	성 명		
종로	사직	1				294-3	대	12.5평			294-2	이삼순		
		2				301-3	"	7.1			301	변봉현		
		3				302-4	"	8.0					신적굴	
		4				304-56	"	5.9			충무로3가3-178		조희덕	
		5				304-52	"	0.1			공덕동 292-6		홍성거	
		6				304-54	"	29.6			행촌동 1-4		변홍섭	
		7				304-53	"	7.7			내수동 114		유세용	
		8				304-34	도	22.0			불광동 1-45		남상순	
		9				304-13	대	37.0			304-13		신영숙	
		10				304-21	"	28			성동7송정동70		홍양정 홍석화사	
		11				304-22	"	22.0			내수동 28		안순금	
		12				304-55	"	32.5			내수동 184		조재대	
		13				308-2	"	53.8			308		수도교회	
		14				304-57	"	37.7			세종로 89		전국통신 노동조합	
		15				304-58	"	9.3						
		행촌		16				1-122	"	44.7			신당동 405-10	김부용
				17				1-106	"	10.6			158-5	장석원
				18				1-116	"	30.			신당동 405-10	김부용
				19				1-79	"	4.3			충무로3가3-109	이호경
				20				1-119	"	33.4			1-49	심재복
				21				1-115	"	197.5				김부용
				22				1-34	"	14.5			충무로3가22-1	강신원
				23				1-118	"	14.0			1-18	이장표
				24				1-72	"	10.0				
				25				1-38	"	6.2			충남 대덕군 유 충년 장대리 232	

토지소재		이 동 전				이 동 후				이 동	소 유 자	
구	동	지번	지목	면적	등급	지번	지목	면적	등급	년월일유	주소	성명
종보	행촌	26				1-74	대	21.0	경		1-38	유지수
	"	27				1-70	"	1.7			1-2	홍판의인
	"	28				1-71	"	6.1			"	"
	"	29				16-3	"	4.0			봉천동 458-71	문용
	"	30				16-5	"	37.2			교남동 104	허호태
	"	31				25-2	"	5.6			송월동 101	이문식
	"	32				25-1	"	45.2			36	한기춘
	"	33				25-8	"	2.0			십문로 2가 45	장영욱
	"	34				37-2	"	28.6			4-21	이완섭
	"	35				37-3	"	1.3			"	"
	"	36				37-4	"	10.9			"	"
	"	37				37-1	"	30.1			갈현동 9-17	박광규
	"	38				37-5	"	9.6			"	"
	"	39				37-16	"	23.3			37-16	이한건
	"	40				37-17	"	23.6			"	"
	"	41				45-1	"	28.1			45-11	이정하
	"	42				45-2	"	9.0			45-1	이정일
	"	43				45-11	"	37.4			45-11	이침하
	"	44				144-1	"	34.0			144-11	정경태
	"	45				144-10	"	10.3			연건동 7-10	김동선
	"	46				158-3	"	22.1			158-3	김봉규
	"	47				158-4	"	19.6			174-4	김옥순
	"	48				158-5	"	18.3			철주시 우암동 379-5	최병선
	"	49				158-6	"	5.0			158-6	하정자

토지소재		이 동 전				이 동 후				아 동 전 일 사 유	소 유 자	
구	분	지 번	지 목	면 적	등 급	지 번	지 목	면 적	등 급		주 소	성 명
종로	행촌		50			158-1	대	16.2				김윤식
	"		51			158-2	"	29.9		158-2		박득희
	"		52			158-10	"	26.6		건농동 110		심명택
	"		53			158-9	"	5.0		200		최현욱
	"		54			180-2	"	12.4		180-2		표윤경
	"		55			180-3	"	24.1		현저동 45		김희순
	"		56			180-4	"	21.4		130-4		유병득
	"		57			180-6	"	18.8		180-6		고병창
	"		58			180-7	"	3.2		187		김계형
	"		59			180-1	"	45.3		209-50		서유자
	"		60			180-5	"	16.8		189-1		이귀남
	"		61			171-179	"	0.3		171		학교법인 대신학원
	"		62			208-3	"	1.4		210-203		임규지
	"		63			208-7	"	1.8		"		"
	"		64			208-8	"	1.2		"		"
	"		65			208-15	"	0.9		"		"
	"		66			209-79	"	32.5		209		장관
	"		67			208-2	"	3.4		5-46		송태창
	"		68			208-14	"	0.1		"		"
"		69			209-78	"	33.9		"		"	
종로	교북		70			10-2	"	14.2		7-2		김윤식
	"		71			10-19	"	27.7		만리동2가 116-50		고대성
	"		72			10-18	"	27.4		신림동 25		김순만
	"		73			10-17	"	27.5		11-1		한적부

토지소재		이 동 건				이 동 후				이 동 면적 및 사유	소 유 자	
구	동	지 번	지 목	면 적	등 급	지 번	지 목	등 급	등 급		주 소	성 명
종로	교북	74				10-16	대	19.0	평		11-1	한격부
		75				10-14	"	11.8			4-26	김학기
		76				10-27	"	8.7			5-19	조효현
		77				10-13	"	11.4			도화동 2-70	이배동
		78				10-12	"	0.6			10-12	노경호
		79				10-21	"	0.8			"	"
		80				1-78	"	6.6			마포구신수동 377	송한창
		81				1-79	"	28.4			"	"
		82				5-1	"	23.9			교북동 5-2	한덕근
		83				5-2	"	31.3			"	문영회
		84				1-50	"	76.1			중구 부침동 94	문영회 석순윤
		85				1-51	"	2.2			"	기아산업 대림의사
		86				1-82	"	34.3			현저동 106	교장노회 영천교회
		87				1-81	"	14.2			1-12	최병태
		88				1-48	"	34.9			1-48	영천교회
		89				1-17	"	9.2			1-12	최병태
		90				1-62	"	2.0			익선동 56-3	"
		91				1-77	"	17.1			1-12	"
		92				2-5	"	7.1			"	"
		93				1-47	"	4.1			"	기아산업
94				1-80	"	1.9			홍파동 56-11	김양식		
행촌		95				-70	도	1.7		유성면장대리 232	유을회	
교북		96				0-1	대	16.9		7-1	민은주	
행촌		97				3-7	"	59.0		소공동 45	조영단	
교북		98				0-3	"	0.5		5의 21	한격부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46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실시
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35 호(78.4.3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1 호 (78.5.24)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우전중·고등학교 용지에 대하여 공사구간내 귀속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.

2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.

3. 관저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

1978. 6. .
서울특별시
공 략 개 요

1. 사업장의 위치: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산 59-2 의 8 필

2. 사업의 종류와 등급: 도시계획 사업(학교) 우전중고등학교 신설

3. 사업의 규모(면적): 10,022.06 평

4. 사업의 시행자: 학교법인 우전학원 이사장이 중 근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
가. 착수예정일: 78. 6. .
나. 준공예정일: 78. 8. .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(별첨 토지조서)

수용대상 재산의 표시

토지의소재지	지 번	지 목	지	적	비 고
강서구내발산동	산 56	임	840평중	237.46평	
	산 58	임	2,520평중	1,190.33평	
	산 405	건	696평중	192.99평	
	407-1	건	116평		

사 명

◎ 1978. 5.30.

세 형 과 김진옥
서 기 관

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소장
직무대리를 명함.

관 합 과 유중호
서 기 관

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.

◎ 1978. 6. 8.

종 후 과 이종훈
지방행정사무관

재무부 진출을 명함.

관 합 구 김동일
행정사무관

서기관에 임함.

관악구 민방위국장에 포함.

중 구 김진수
행정사무관

서기관에 임함.

중구 민방위국장에 포함.

◎ 1978. 6.17.

장 책 장 김재원
지방행정사무관

지방공무원법 제 66조 1항
에 의거 그 직을 면함.

◎ 1978. 6.19.

영 등 포 구 김영구
서 기 관

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2 제 1항
5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

서울특별시장